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11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공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업무를 경영판로국에서 중소기업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기능 강화 및 재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課) 조직인 옴부즈만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24724 호, 2013. 9.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3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26 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법무담당관”을 각각 “창조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제4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옴부즈만지원단)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화규제개선과”를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구과”로 한다.

제7조제3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14.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15.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6. 중소기업에 관한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17.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8.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정책의 조사·분석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성과의 점검 및 분석
3.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5.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회 운영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⑤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4.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6.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7. 수탁·위탁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0.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1.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14.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특화규제개선과장”을 “지역특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9.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1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1.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제3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31호 및 제3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24.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25.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지원

26.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지원

27. 일시정지제도의 운영·지원

28.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29.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30.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제8조의2제2항 중 “혁신지원과 및 성장촉진과”를 “기업혁신지원과 및 재도전성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시책의 수립·시행

11.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

14.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6.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19.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20.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지원과장”을 “기업혁신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및 투자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1.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13.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14.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15.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재도전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중소기업 구조조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 업무 조정
6.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및 부실징후 기업 정상화 지원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0.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11.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평가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 제공
14.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수·합병 등의 지원
15.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입지 및 세제 지원
16.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1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18.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9.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20.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2항 중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를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로정책과장"을 "공공구매판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1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운영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

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에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교류·협력

18.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19.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20.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21.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9의2.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26.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제11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종전의 제27호)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 중견기업정책국"으로 한다.

26.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7. 중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에 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의3.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21.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제18호 중 "기술혁신국"을 "생산기술국"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336"을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26"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을 “45”로 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를 “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2”를 “4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35”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14”를 “325”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7”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을 “14”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5”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8”을 “50”으로 하며,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를 “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6”을 “3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10”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56”을 “359”로 하며,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69”를 “94”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6”을 “19”로 하며, 공업연구사 “45”를 “2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479”를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45”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12”를 “15”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제16조의2 관련)

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
일반직 계	1
8급	1
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13
일반직 계	13
6급	5
7급	1
8급	4
9급	1
연구사	2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3
일반직 계	3
8급	2
9급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창조행정법무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3. ~ 23. (생 략)	3. ~ 23.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옴부즈만지원단) 옴부

	즈만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중소기업정책국) ① (생략)	제7조(중소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정책국에 정책총괄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화규제개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분석과, 동반성장지원과, 규제영향평가과 및 지역특구과----------.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13.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 조사·분석 및 전망
1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14.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15.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15.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 관리

16.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16. 중소기업에 관한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17. 취약·낙후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18. 중소기업 분야의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에 대한 품질진단
19.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삭 제>
21.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삭 제>
23.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1. 중소기업정책의 조사·분석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의 수립 2.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성과의 점검 및 분석 3.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5. 중소기업정책 관련 정보의 연계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회 운영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교육 및 홍보 7.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반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6.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

관한 사항	정 및 지원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7. 수탁·위탁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의 신뢰성·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9.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4.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⑥ 규제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 총괄 운영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6. 옴부즈만 활동지원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
7. 옴부즈만 활동 대외 공표 및 홍보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옴부즈만 지역별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옴부즈만 전문위원, 전문연구기관, 공청회 등 운영	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연구 및 평가	1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조사·연구	1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지역 및 분야별 중소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 실태조사	<삭 제>
13. 중소기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 분석, 개선 및 사후 관리	<삭 제>
14.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삭 제>
15.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삭 제>
16. 중소기업에 관한 업종별·지역별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삭 제>
17. 업종별 경쟁력 실태조사	<삭 제>
18. 중소기업 관련 지표 및 통계의 관리	<삭 제>
19. 중소기업 현황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삭 제>
20.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의 개발	<삭 제>
21. 청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	<삭 제>

⑦ 지역특화규제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지역특구과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운용
<신 설>	9.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시책의 추진
<신 설>	10.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신 설>	11. 취약·낙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생 략)	제8조(소상공인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사업조정제도 종합계획의 수립
<신 설>	24. 사업조정 관련 법령의 운용
<신 설>	25.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지원
<신 설>	26. 사전조사신청제도의 운영·지원

<신 설>	27. 일시정지제도의 운영·지원
<신 설>	28. 사업조정 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 분석
<신 설>	29. 사업조정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및 이행명령 상황 점검
<신 설>	30. 사업조정제도에 관한 교육
23.·24. (생 략)	31.·32. (현행 제23호 및 제24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생 략)	제8조의2(중견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견기업정책국에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및 성장촉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기업혁신지원과 및 재도전성장과----------.
③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시책의 수립·시행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총괄
<신 설>	14.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저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신 설>	16.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창달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신 설>	19.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
<신 설>	20. 그 밖에 중견기업에 관한 업무 중 중견기업정책국 내의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④ 기업혁신지원과장---------

분장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세제·입지 및 투자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0. 중견기업 관련 금융 및 투자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11.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신 설>	13. 벤처형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신 설>	14.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신 설>	15. 유망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재도전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총괄	1. 중견기업·중소기업 재창업 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2. 중견기업·중소기업 구조조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의 기업인수·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6.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 및 관리 7.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중견기업 지원시책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견기업·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 및 맞춤형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 업무 조정 6. 기업 경영건전성 진단을 통한 중소기업 부실화 차단 및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0.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조사 실시 11.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2.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평가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정

	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 제공 14. 사업전환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수·합병 등의 지원 15.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입지 및 세제 지원 16.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1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18.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9.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실태조사, 동향분석 및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관한 사항 20.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부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1. 중소기업 재창업 관련 교육, 조세·법률 상담 및 교육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 (생략)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9조(창업벤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분장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용
3.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벤처기업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6. 삭 제	5.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의 홍보 및 벤처기업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관련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협동화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 제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용	
14.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5.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실태 조사 실시

16.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17.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등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사업전환 절차의 원활화 지원

19. 사업전환 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정보 제공

20.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

21.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지원

2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자금·투자·인력·입지 및 세제 지원

23. 유휴설비의 유통 지원

24. ~ 26. 삭 제

27. 중소기업의 회생 및 사업정리 지원

28.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29. 중소 농·공·상 상생 협력

의 지원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판로국) ① (생 략)	제10조(경영판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영판로국에 판로정책과, 공공구매제도과 및 해외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
③ 판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공공구매판로과장---------.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개선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4.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5.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관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

행 및 결제조건에 대한 조사·개선	산 지원
6.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의 운영
7.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운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리·감독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
11.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조사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신 설>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신 설>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신 설>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신 설>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신 설>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신 설>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제도의 운영
12. ~ 36. (생 략)	20. ~ 44. (현행 제12호부터 제36호까지와 같음)
④ 공공구매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금융 및 자금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증대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총괄·운영
3.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운영	3. 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5.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
6.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6.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증

의 운영

7.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의 운영

8.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9.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운영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의 구축·운영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실태 조사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운용

13. 공공구매론 제도의 운영

14.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1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제도의 운영

16. 적격조합확인제도의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에 관한 사항

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8.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9.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 관한 사항

12.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도·감독

1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운용

14. 중소기업의 어음제도 및 매출채권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촉진에 관한 사항

17.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 경영실태·동향

	조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동향분석 및 인력지원계획의 수립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운용 3.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및 인적자원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9.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에 관한 사항 1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9.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산학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해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외국의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의 교류·협력
<신 설>	18.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신 설>	19. 중소기업 관련 국제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신 설>	20.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실태의 조사·분석
<신 설>	21. 해외 파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생산기술국) ①·② (생 략)	제11조(생산기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산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에 관한 사항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20. ~ 25. (생 략)	20.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27. ~ 32. (생 략)	27. ~ 32. (현행과 같음)
④ 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기술사업화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삭 제>
⑤기술협력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0. 중소기업 간 기술 융합·복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11.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의 지원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중소기업청) ①·② (생 략)	제13조(지방중소기업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2급지 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과 제4항 및 제5항의 업무를 분장하고,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4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4.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삭 제>
5. ~ 25. (생 략)	5.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27. 중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기획조정관 및 창업벤처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28. ---------- 기획조정관, 중견기업정책국 ----------
④ 공공판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신 설>	8의3.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23.·24. (생 략)	23.·2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품성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기술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의 다음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시험·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⑥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그 밖에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국의 소관 업무 중 다른 과에 분장되지 아니한 사항	18. ---------- 생산기술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6	347	+11
·	·	·	
·	·	·	
일반직 계	315	326	+11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7	+1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14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5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3	45	+2
·	·	·	

·	·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	7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2	44	+2
·	·	·	
·	·	·	

[별표 3]

중소기업청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5	346	+11
·	·	·	
·	·	·	
일반직 계	314	325	+11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7	+1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3	14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5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8	50	+2
·	·	·	

.	.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4	7	+3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36	38	+2
.	.	.	
.	.	.	

[별표 4]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10	413	+3
일반직 계	356	359	+3
.	.	.	
.	.	.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69	94	+25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16	19	+3
.	.	.	
.	.	.	
공업연구사	45	20	-25
.	.	.	
.	.	.	

[별표 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9	482	+3
·	·	·	
·	·	·	
일반직 계	42	45	+3
·	·	·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 또는 사서주사	12	15	+3
·	·	·	
·	·	·	